

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

과 목 : 대지계획 제2과제(대지분석 및 주차계획) 배점 35 / 100 한솔아카데미 www.inup.co.kr

제 목 :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건축가능영역

1. 과제개요

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자 한다.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구하고 배치도, 1층 평면 및 주차계획도, 단면도 및 계획개요를 작성하시오.

2. 대지조건

- (1) 용도지역 : 제3종 일반주거지역
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
- (2) 건 폐 율 : 50% 이하
- (3) 용 적 률 : 200% 이하
- (4) 주변현황 : <대지 현황도> 참조

3. 계획조건

- (1)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지정한다.
 이 경우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 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하되 건축물과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.
 단, 차량진출입로는 설치가능하다.
- (2) 차량 진출입로는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다.
- (3) 각 층의 층고는 4m로 하며, 지상 1층 바닥레벨은 대지레벨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.
- (4) <대지 현황도>에 표기된 모든 레벨은 조정 불가하며 가중평균값이다.
- (5) 벽체두께 및 기둥은 고려하지 않는다.
- (6) 모든 바닥과 벽체는 수평과 수직으로 계획한다.
- (7) 조경면적은 충족한 것으로 한다.
- (8) 주차계획
 - ① 주차대수는 총 4대(장애인전용 주차 1대 포함)로 한다.
 - ② 주차단위구획
 - 일반형 주차 : 2.5m × 5.0m
 - 장애인전용 주차 : 3.5m × 5.0m
 - ③ 차량진출입로와 차로 너비는 6m 이상으로 한다.
 - ④ 모든 주차구획은 반드시 필로티 하부(건축물로 덮여 있는 외부공간)에 계획하고, 차량진출입로와 차로는 필로티 하부에 계획하지 않는다.



4.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

- (1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
 - ① 높이 9m 이하인 부분 : 1.5m 이상
 - ②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: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
- (2)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22m로 한다.
- (3) 건축물과의 이격거리
 - 인접대지 경계선 : 1m 이상
 - 주차구획 : 0.5m 이상
- (4) 보호수목 건축제한선과의 이격거리
 - 건축물 : 0.5m 이상
 - 주차구획 : 0.5m 이상
- (5) 옥탑 및 파라펫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.

5. 도면작성요령

- (1) 배치도에는 2층~최상층 건축영역을 <보기>와 같이 표기하고,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기한다.
- (2) 1층 평면 및 주차계획도에는 1층 건축영역과 주차계획을 표기한다.
- (3) 단면도에는 배치도에 표시된 <A-A'> 단면의 건축영역을 <보기>와 같이 표기한다.
- (4) 모든 기준선, 제한선, 이격거리, 층수 및 치수를 다음 도면에 표기한다.
 - ① 배치도
 - ② 1층 평면 및 주차계획도
 - ③ A-A' 단면도
- (5) 계획개요의 수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.
- (6) 단위 : m
- (7) 축척 : 1/200

<보기>

홀수층	
짝수층	

6. 유의사항

- (1) 답안작성은 반드시 흑색 연필로 한다.
- (2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- (3) 치수 표기 시 답안지의 여백이 없을 때에는 융통성 있게 표기한다.

<대지 현황도> 축척 없음

